

#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재 결 서

사 건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10일 등』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번 호 2019-178호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학교장  
재 결 일 자 2019. 12. 16.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9.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10일 등』 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학교 학생이고, 피청구인은 위 □□학교장으로, 피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합니다) 심의결과에 따라 2019. 10. 21. 청구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건에 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의거 「①서면사과, ②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조치결정 후 졸업까지), ③출석정지 10일, ④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10시간」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9. 10. 22.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서 2019. 10. 3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의 조치원인에 고가의류라고 표현하였는데, 의류의 금액을 표기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알아본 바 의류의 가격은 10만원이고 이미 변제하였다.

나. 또한 조치원인에 ‘갈취’ 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협박이나 폭행을 가한 적이 없으며, 빌려 입은 후 분실한 것이고, 청구인이 피해학생과 친분이 없다고 하였는데 친분이 없는 관계에서 메신저는 어떻게 하였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고, 협박으로 옷을 갈취하였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옷을 중고로 판매한 적도 없다.

다. 청구인의 고성 건은 선생님이 청구인을 계속 다그치기에 한 행동이었으며, 당시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자치위원회에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치원인으로 되어 있기에,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하여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당사자간 화해가 없는 점도 피청구인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기에 접촉을 할 수 없었고, 피청구인은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청구인을 몰아간 것이며, 청구인은 폭행, 협박, 갈취로 옷을 편취한 적이 없기에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9. 9. 20. 친분이 없는 1학년 학생을 SNS 메시지를 통하여 화장실 대변칸으로 불러 후드티를 벗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학생이 여러 차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후드티를 잠깐 입고 돌려준다 하며 가져간 사실이 있다.

나. 피해학생이 2019. 9. 22. 이후부터 후드티를 돌려받기 위해 여러 차례 메시지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후드티를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때마다 청구인은 피해학생에게 돌려줄테니 자신의 집으로 오라며 시간 약속을 잡고 약속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기를 여러 차례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메시지를 통하여 ‘부모님에게 잃어버린 것으로 해달라’며 돌려주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후드티를 잃어버렸다고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19. 9. 23. 오전 9시 20분에 빌려간 옷과 동일한 후드티를 청구인 본인 페이스북에 찍어 올리고, 동일한 날에 같은 브랜드의 후드티를 중고로 판다는 게시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잠깐 입고 돌려준다면 피해학생의 옷을 가져간 점, 피해학생이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시간을 바꾸어 가며 결국에는 잃어버렸다면 돌려주지 아니한 점, 또한 정황상 빌려 입은 옷을 이미 중고로 판매해 버린 점, 위와 같은 정황들로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애초에 빌려간 옷을 돌려줄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갈취 행위로 충분히 볼 수 있으며 혹은 그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마. 자치위원회에서는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각각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내어 이를 합산하여 6호 출석정지를 결정하였고, 더불어 피해학생에게 사과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역시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앞으로도 갈등 없이 지낼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당사자 간에 화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심의, 의결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이 부당,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2. 판 단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청구인과 상대 학생의 진술서, 페이스북 캡처 등 증거자료, 피청구인 대리인에 대한 구술심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019. 9. 20. 오전 8시 30분경, 3학년인 청구인이 1학년 피해학생을 화장실로 불러 피해학생의 후드티를 빌려 입고, 돌려준다고 하면서 시간을 미루다가 결국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미 옷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한 시간인 2019. 9. 23. 오전 9시 20분에 빌려간 옷과 동일한 후드티를 청구인 본인 페이스북에 찍어 올리고, 동일한 날에 같은 브랜드의 후드티를 중고로 판다는 게시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통지서의 조치원인에 고가의류라고 표현하였는데, 의류의 금액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의류의 가격은 10만원이고 이미 변제하였다고 하여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의 나이인 중학생 시절 10만원 상당의 의류를 고가의류라고 표현하는 것은 표현의 재량을 넘어서는 범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변제하였기에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는 잃어버린 이후 바로 옷값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있는 이후에야 의류의 가격에 대하여 변제하였음이 밝혀진 이상 변제를 하였기에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청구인은 조치원인에 ‘갈취’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협박이나 폭행을 가한 적이 없으며, 빌려 입은 후 분실한 것이고, 청구인의 고성은 선생님이 계속 다그치기에 한 행동일 뿐이며, 당시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자치위원회에서 진술하였음에도 이를 조치원인으로 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과 친분이 없는 피해학생을 화장실로 불러 거절의사를 밝히는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결국은 옷을 빌린 행위가 갈취에 해당하며, 실제로 선생님이 다그치자 선생님에게 고성을 지르는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동은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두려움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청구인은 협박으로 옷을 갈취하였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옷을 중고로 판매한 적도 없다고 하기에 살피건대,

피해학생을 화장실로 불러 거절의사를 밝히는 피해학생에게 반복하여 요구하여 결국은 화장실 내에서 옷을 벗게 하여 빌려 입은 행위가 존재하므로, 화장실로 불러내고 친구가 아닌 사이에서 3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에게 옷을 빌려 달라 요구하는 상황 자체가 협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갈취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여질 수 없다.

#### 라.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위 법률 제17조의 의거하여 재량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